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5 - 3호

『인천광역시 지속가능 시책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지속가능 시책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후임 단체장의 취임으로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각종 정책과 시책사업이 중도에 변경되거나 중단됨에 따라 기 투입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행정의 혼란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조장함
- 예산집행 등이 일정한 기준의 범위 이상 진행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후임 단체장의 취임 이후에도 지속가능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 시책사업 추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라 인계받은 후임 인천광역시장의 소관 사무 중 공정률·예산집행 등이 일정 범위 이상 진행된 시책사업의 지속적 추진 또는 중단에 따른 행·재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 시책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
- “지속가능 시책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인계 받은 후임 인천광역시장의 소관사무로써 중요 미결업무,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계속추진대상업무 중 공정률 또는 예산집행이 70%이상 진척된 사업으로 정의(안 제2조)
-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 시장은 지속가능 시책사업에 대하여 그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와 함께 후임 시장에게 인계할 수 있고, 후임 시장은 인수한 사업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속적 추진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2,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 시책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 시책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라 인계받은 후임 인천광역시시장의 소관 사무 중 공정률·예산집행 등이 일정 범위 이상 진행된 시책사업의 지속적 추진 또는 중단에 따른 행·재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 시책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 시책사업”이란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인계 받은 후임 인천광역시시장의 소관사무로써 중요 미결업무,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계속추진대상업무 중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을 말한다.
2. “일정범위 이상 진행된 시책사업”이란 지속가능 시책사업으로 공정률 또는 예산 집행이 70%이상 진척된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심의)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대상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 시책사업 추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장은 대상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대상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적 추진의 필요성
2. 지속적 추진이나 중단에 따른 행·재정력의 낭비 또는 법령위반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사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시책사업의 추진여부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정책평가 또는 행정관련 분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 해당 심의안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의원
3.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하면 자동 해체된다.

-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안전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해야 해당 안전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조정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평가기획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계인수) ① 시장은 지속가능 시책사업에 대하여 그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와 함께 후임 시장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② 후임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한 사업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속적 추진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6조, 제116조의2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6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6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사무인계) ① 법 제10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함에 따른 예산 발생으로 년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의원